

# 우리나라 방제선 배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

윤종휘\* · 장하용\*\* · 이은방\*\*\* · 임채현\*\*\*\* · 김태형\*\*\*

\*, \*\*\* 한국해양대학교, \*\*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, \*\*\*\* 목포해양대학교

## On Improvement of Korea's Response Vessel Deployment Regime

Jong-Hwui Yun\* · Ha-Lyong Jang\*\* · Eun-Bang Lee\*\*\* · Chae-Hyun Lim\*\*\*\* · Tae-Hyung Kim\*\*\*

\*, \*\*\* Korea Maritime & Ocean Univ., \*\* Korea Port Training Institute, \*\*\*\* Mokpo Maritime Univ.

**핵심용어** : 방제선, 배치제도, 배치기준, 오염행위자원칙, 방제업체

**Key Words** : response Vessel, Deployment Regime, PPP Principle, Response Organizations

### I. 연구배경 및 목적

**연구배경**

- 국제적으로 해양오염사고(Marine Pollution)시 방제책임에 대하여 PPP 원칙 적용
- 해양선진국의 관련 법령에 PPP 원칙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이 명시, 이에 따른 선주/기름저장시설주 방제활동을 대행할 민간방제업체 활성화
- 우리나라의 방제선 배치제도의 경우, 배치대행업 KOEM 독점 및 배치기준의 불명확화 등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및 그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

**연구목적**

- 우리나라의 현행 방제선 배치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방제선 배치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

### III. 방제선 배치 세부항목 기준 설정

**세부항목별 기준**

- 배치장소: 선박-9개 지정항만/해역 또는 3시간 이내 도달장소.  
시설-시설위치해역/비축·비상용시설은 3시간 이내 도달장소
- 방제선: 전용방제선(skimmer, pump, storage) 및 비전용방제선(기본장치 일체형) 크레인/파워백/인력(선박운항요원, 방제요원), 선박운항상태 등
- 방제장비: 배출된 기름회수용 모든 기계/장비/시설  
오일봄/작업선 및 인력/통신기기/장비작동상태 등
- 유회수기 성능: 장비(nameplate)에 표시된 성능
- 기름회수능력: 배치설치 기준에 따른 회수능력의 2배
- 대용시간: 3시간으로 간주(사고접수/출동지시부터 현장도착시까지 소요시간)  
\* 육상, 항공 및 해상이동시간 계산 제외
- 인력: 방제선, 보조선, 작업선 최소운항 및 방제요원  
- 방제선(또는 보조선): 운항1명, 방제 2명  
- 작업선: 운항 및 지원 1명
- 교육훈련: 관련 요원에 대한 교육/훈련
- 장비등 임대한 경우: 임대계약서 제출

### II. 현행 방제선 배치제도 분석

**관련법령 조사분석**

\* 관련법령: 해양환경관리법/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

- 배치의무 및 배치의무자(Tanker, non-Tanker, Facility)
- 배치해역
- 배치설치기준(개별, 공동, 위탁) 및 기준
- 방제선/방제장비에 대한 정의
- 배치의무자 위반시 조치
- 오염물질을 배출시의 조치
- 방제분담금/수수료
- 해양환경감시원
- 자재 및 약재의 비치

**배치이행 현장실사**

- 현장방문기관: 한국석유공사(거제), GS칼텍스(여수), KOEM 여수지사/광양출장소
- 점검방법: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작성, 관련자 대면 및 현장확인
- 점검결과: 위탁배치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, 관련법령 미숙지 등
- 개선방안: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, 철저한 점검실시, 미비점 개선·보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

### IV. 결론 및 고찰

**결론**

- PPP원칙 이행강화를 위한 방제업체 등급부여제도 도입·운영
- 배치의무이행여부 점검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한 대비태세 유지
- 방제선 배치·설치기준에 대한 면밀한 조사·분석 및 재평가 → 과학적이고 타당성·실효성 높은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
- 최적방제선배치제도 확립/시행 장시간 소요 →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
- 관계기관과 현행 방제분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

**단계별 추진과제**

- 방제선배치제도를 운영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단계별 추진과제

\* First Author : jhyun@kmou.ac.kr